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수(人獸)공통질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비관찰·진단 및 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9월 29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
조 명 래

환 경 부 장 관

●대통령령 제31071호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법 제6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- 1.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(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)
- 2. 제1항제2호, 제2호의2 및 제5호의 자료(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출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)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성상”을 “성질·상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법 제10조제6항”을 “법 제10조제6항 진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.

- 1.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(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)
- 2. 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6호의 자료(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입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)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성상”을 “성질·상태”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“법 제18조의2제3항”을 각각 “법 제18조의2제3항 진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“성상”을 “성질·상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

설한다.

⑦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한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.

1.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(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)

나. 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5호의 자료(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)

2.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(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)

나. 제2항제3호, 제4호 및 제10호의 자료(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)

제2장에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보고·검사 등)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,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제19조의4(위반사실의 공표)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,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.

제19조의5(과징금의 부과)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.

③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의 파기 또는 미제출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

2. 천재지변, 화재, 전시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.

⑥ 수납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19조의6(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)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”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
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,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.

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청문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.

- 1.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
- 2.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수출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179호, 2020. 3. 31. 공포, 10. 1. 시행)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등을 수출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,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9월 29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조명래
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1072호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